

정 관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약칭 ‘문화도시협회’,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Culture Cities Exchange Association’, 약칭 ‘ICC’-이하 ‘법인’)”라 한다.

제2조(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경기도)에 두고, 강원도 강릉시(강원도), 광주광역시에 분사무소(지회)를 둔다.
- ② 분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와 국제 문화교류·협력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실천적인 제반 활동 등을 함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인 문화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영혼도서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온 국민의 자서전 쓰기를 장려하여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함으로써 인문정신을 고양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축적된 ‘영혼의 유산’인 자서전들을 길이 보전하여 후세에게 책을 통해 선인들의 삶을 만들고 추모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국제문화 교류·협력·교육사업
- ② 문화정책 개발사업
- ③ 연구조사 및 학술사업
- ④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조성사업
- ⑤ 국내외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에 관한 세미나 및 공청회

- ⑥ 대국민 홍보사업
- ⑦ 기타 필요한 사업
- ⑧ 안중근평화상 제정 및 시상
- ⑨ 영혼도서관 건립 및 운영
- ⑩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출판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에 결의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상임이사 1인
- ③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④ 감사 2인
- ⑤ 정책연구소장 1인
- ⑥ 문화도시환경연구소장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 ① 총회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 3.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② 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실행이사)

- ① 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 중 5인 이내의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실행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7조(명예임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

1. 사업목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지체 없이 새 이사장의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 1) 재산상황의 감사
 - 2) 재산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 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의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 6)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

하는 출석회원 2인과 이사 2인,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회 구성)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각각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이사회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대리인은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사업계획, 실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에 필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탁금
 3. 양여나 기부·기탁받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관리·처분)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양도·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그리고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수입금)

- ① 법인의 수입금은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5조(후원회) 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재원) 법인의 운영재원은 후원금과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의 승인)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직제 및 직원

제43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상임 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4조(객원연구원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박사 및 석사 혹은 실무경력이 나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비상임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수당) 비상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연구사업의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임용·보수·복무) 상임연구위원과 연구원 등의 임용 및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자문위원)

- ① 법인의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8 장 보 칙

제48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출연금에서 필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경비로 지출된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 중에서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 ③ 법인의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되, 법인 설립 당시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정동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5동 211호	3년
상임이사	이돈홍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무등아파트 101동 1002호	3년
이 사	정해숙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신우아파트 1동 311호	3년
이 사	이기웅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강촌마을 우방아파트 814동 1403호	3년
이 사	문순태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원리 114번지	3년
이 사	성진기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아파트 105동 803호	3년
이 사	윤풍식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101동 1505호	3년
이 사	한국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우성1차아파트 1동 206호	3년
이 사	정진백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780-1번지	3년
이 사	박선정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흥3차아파트 303동 1603호	3년
이 사	김선옥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금호3차아파트 305동 1706호	3년
감 사	이종식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해태아파트 103동 707호	3년
감 사	조만기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 라인아파트 101동 802호	3년

제4조(창립 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기명날인
정동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5동 211호	
박선정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흥3차아파트 303동 1603호	
이종식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해태아파트 103동 707호	
남상철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309동 201호	
박정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남양파크 110동 202호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558-1번지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귀중

재 산 목 록

구 분	재 산 명	수 량	금 액 (원)	비 고
기본재산	은행예탁금	1	30,000,000	
보통재산	사무집기	10	1,000,000	책상(3), 의자(6) 회의용 테이블(1)
	컴퓨터	3	1,500,000	데스크탑 PC(3)
	프린터	2	300,000	레이저(1), 잉크젯(1)
	복합기	1	300,000	팩스, 복사 겸용
	냉장고	2	300,000	
	디지털카메라	1	400,000	
	전화기	4	200,000	
합 계		24	34,000,000	

위 사실을 확인함.

2008년 11월 17일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장 (인)

출연자산확인서

- 출연자 성명 : 정 동 채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5동 211호
- 출 연 금 액 : ₩30,000,000원
- 계 좌 번 호 : 농협 100088-56-000802

위 예금은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의 출연자산임을 확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출연자 정 동 채 (인)

취임승낙서

본인 등은 2008년 11월 6일 창립총회 이사장, 이사, 감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이사장	정 동 채	(인)
이 사	이 돈 흥	(인)
이 사	정 해 숙	(인)
이 사	이 기 웅	(인)
이 사	문 순 태	(인)
이 사	윤 풍 식	(인)
이 사	성 진 기	(인)
이 사	한 국 재	(인)
이 사	정 진 백	(인)
이 사	박 선 정	(인)
이 사	김 선 옥	(인)
감 사	이 종 식	(인)
감 사	조 만 기	(인)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귀중